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9년 7월 5일

신한BNPP유로커버드콜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p>1.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: 제2조 (용어의 정의)</p>	<p>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"집합투자"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&lt;신설&gt;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/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.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"집합투자"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(또는 <b>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b>)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/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.  &lt;이하 현행과 같음&gt;</p>
<p>1.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: 제8조 (신탁금의 납입)</p>	<p>제8조 (신탁금의 납입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<b>현금 또는 수표로</b>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<b>현금 또는 수표로</b>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8조 (신탁금의 납입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<b>금전으로</b>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<b>금전으로</b>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 &lt;이하 현행과 같음&gt;</p>
<p>1.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: 제15조 (자산운용지시 등)</p>	<p>제15조 (자산운용지시 등) ① &lt;생략&gt;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<b>그 투자신탁재산으로</b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15조 (자산운용지시 등) ① &lt;현행과 같음&gt;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<b>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b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&lt;이하 현행과 같음&gt;</p>
<p>1.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 : 제42조 (기타 운용비용 등)</p>	<p>제42조 (기타 운용비용 등) ① &lt;생략&gt; ② 제1항에서 "비용"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~5. &lt;생략&gt;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&lt;신설&gt; 7.~9. &lt;생략&gt;</p>	<p>제42조 (기타 운용비용 등) ① &lt;생략&gt; ② 제1항에서 "비용"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~5. &lt;생략&gt;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(단, <b>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</b>) 7.~9. &lt;생략&gt;</p>
<p>1.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: 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&lt;생략&gt;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 &lt;생략&gt;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&lt;신설&gt;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45조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 &lt;현행과 같음&gt;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 &lt;현행과 같음&gt;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b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 &lt;이하 현행과 같음&gt;</p>

<p>1.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: 제49조 (금전차입 등의 제한)</p>	<p>제49조 (금전차입 등의 제한)        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         1.~2. &lt;생략&gt;          &lt;신설&gt;         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49조 (금전차입 등의 제한)        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         1.~2. &lt;현행과 같음&gt;  <b>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정하는 때</b>          &lt;이하 현행과 같음&gt;</p>
<p>1.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: 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	<p>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         ①~⑥ &lt;생략&gt;        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b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</b> 다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       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          ①~⑥ &lt;생략&gt;        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b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</b> 다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         &lt;이하 현행과 동일&gt;</p>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- 3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p>1.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-책임운용역: 박문기,윤동기          -<b>부책임운용역: 허영훈</b></p>	<p>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-책임운용역: 박문기,윤동기          -<b>부책임운용역: 김은영</b>           - 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19년 6월 30일)</p>
<p>2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	<p>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      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      라. 운용자산 규모- <b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9년 6월 30일)</b></p>
<p>3.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	<p>제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▶ 의무해지        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        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 &lt;신설&gt;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	<p>제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▶ 의무해지        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        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 <b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b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
<p>3.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	<p>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. 정기보고서          (2) 자산운용보고서          -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<b>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b>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        가. 정기보고서          (2) 자산운용보고서          -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<b>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b>&lt;이하 현행과 같음&gt;</p>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b>1.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I. 3. 운용전문인력</b>	제2부 I. 3. 운용전문인력 -책임운용역: 박문기,윤동기 <del>-부책임운용역: 허영훈</del>	제2부 I. 3. 운용전문인력 -책임운용역: 박문기,윤동기 <del>-부책임운용역: 김은영</del>  - 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19년 6월 30일)